

2021 - 3145

【 , , .)
 】 ()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·역삼동 일대 청담·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6.9., 수정가결)를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2816호로 주민 의견청취(2020.10.6.~ 2020.10.19.)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

본 ‘청담아파트지구, 삼성아파트지구, 역삼·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23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청담동 일대	-	증) 104,200.8	104,200.8	-
신설	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삼성동 일대	-	증) 290,643.3	290,643.3	-
신설	역삼·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역삼·도곡동 일대	-	증) 669,949.9	669,949.9	-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5.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6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7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

		(㎡)			
1	134 - 18	-	) 61,978.0	61,978.0	
2	134 - 20	-	) 3,840.1	3,840.1	-
1	2	-	) 7,258.8	7,258.8	-
2	4 - 6	-	) 7,571.9	7,571.9	-
· 1	716	-	) 5,316.6	5,316.6	-
· 2	758	-	) 12,263.1	12,263.1	
· 3	527	-	) 138,750.3	138,750.3	-

· : ()

· : 14 (2021.12.24. ~ 2022.1.6.)

·

- (02 - 2133 - 7147)

- (02 - 3423 - 6112), (02 - 3423 - 6063)

·

- ‘ , , .

() ’ . (

([http://www. 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) → → () 가)

- .

- (02 - 2133 - 7147) .